

더 트루엘 포항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더 트루엘 포항」 사이버 건본주택(<https://www.더트루엘포항.com>)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의해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 방문예약은 건본주택에서 전화예약 접수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 * 건본주택 입장 전 및 건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비닐장갑 및 뱃신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
 -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 기타 건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더 트루엘 포항」은 분양 상담전화(☎ 1522-2319)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02.(월요일)**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3.15.(화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127] 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더 트루엘 포항' 견본주택 현장접수로 신청이 가능(인터넷 청약불가)하며, 당사가 요청하는 무주택관련 서약서 및 청약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당사 견본주택 현장 공개추첨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동호추첨 및 계약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2022년 05월 03일(화)	2022년 05월 03일(화)	
방 법	견본주택 현장접수 (13:00)	견본주택 현장 공개추첨 및 계약 (13:30~16:00)	- 청약접수 당일 13:00 까지 접수자에 한하여 동호추첨 및 계약진행(13:00 이후 입장 제한)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 세대수의 100%를 현장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는 무주택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시 현장접수 불가
장 소 및 시 간	- 더 트루엘 포항 견본주택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538-3번지 - 현장접수 : 13:00 - 동호추첨 : 13:30 - 계약체결 : 14:00~16:00		- 기본서류 :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해외출입국증명(별도문의) - 무주택입증 서류 : 당사 양식(무주택서약서) 작성 및 제출 (5월3일 이후 아래 *미비서류 제출 필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등록-세대구성원동의-주택소유확인 → 무주택입증 서류출력/제출

※ 청약접수시간(13:00) 경과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 현장접수 및 동호수 추첨

- 더 트루엘 포항 견본주택 현장 접수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한 접수는 불가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공개 추첨 참여시 기본서류 및 무주택입증을 위한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무순위 청약 접수방법이나, 신청 기준에 대한 문의로는 당사 대표번호(1522-2319)로 연락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견본주택 현장 접수시간(13:00) 이후 입장이 제한되며,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당일 계약서 작성 시 기본서류 및 무주택서약서(작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2021.11.16.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은(2022.05.02.)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528-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4개동 총 255세대 **청약경쟁 발생 타입의 정당계약 이후 무순위 잔여물량 2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별 세대수	약식표기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동·호수	잔여세대
민영 주택	01	082.5820	1	82	82.5820	109.6040	149.3710	45.8100	101동 1104호	1
	02	084.7730E	1	84E	84.7730	113.2610	154.0840	44.5200	101동 1603호	1
	합 계		2	-	-	-	-	-	-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세대, 원)

주택형 (약식)	공 급 세대수	동·라인별	층구분	해 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 30일내	2022.05.16.	2022.09.16.	2023.01.16.	2023.05.16.	2023.09.15.	2024.01.15.	입주시	
82	1	101동 1104호	11층	1	29,648,405	305,951,595	335,600,000	10,000,000	2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33,560,000	100,680,000
84E	1	101동 1603호	16층	1	30,435,013	311,964,987	342,400,000	10,000,000	2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102,720,000

-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정책, 관계법령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를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납부일정에 관한 상세 문의는 당사 분양 상담전화☎ 1522-2319로 연락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당사 건본주택 현장 동호수 추첨 방식에 의해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100%) 선정합니다.

- 청약접수 미달로 인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의거하여 사업주체 임의공급 방식으로 전환 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당첨자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청약자 신분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기타 서류관련 사항은 당사 대표번호(☎ 1522-23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2.05.03.(화요일) 14:00~16:00 더 트루엘 포항 건분주택 [현장접수 및 동호추첨 이후 계약체결 진행]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대리인 계약시 사용불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 발급)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필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유무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별도문의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현장 현금수납 불가
인지세 '15만원' (수입인지)	우체국 및 시중은행 발급가능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 계약자 본인 발급분(대리인 지참)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건분주택 양식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2.05.02.(월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MG새마을금고	9002-1970-4708-1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건분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중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세 납부 일정에 관한 문의는 계약시 문의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104호 계약자 홍길동 → '1011104홍길동' / 101동 1603호 계약자 홍길동 → '1011603홍길동'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형 잔여 세대수의 100% 까지 현장 공개추첨 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2022.05.04.(수요일) 13:00** 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별 현장 공개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선정 합니다.
- 계약체결 : **2022.05.04.(수요일)**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 해당 주택형의 청약 접수 현황 및 계약(예비입주자 계약 포함)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1조1항 및 국세기본법 47조의4 제9항에 따라 공급계약서 체결일 당일 인지세 납부 후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소유확인(세대주 및 세대원) 및 결과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 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분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분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3.15.)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더트루엘포항.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매도인 겸 수탁자	위탁자	시공사
상호	우리자산신탁(주)	(주)새누리홀딩스	일성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성빌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693번길 10, 2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0, 402호(구월동, 태광프라자)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10111-3585382	110111-0234776

■ 견본주택 홈페이지 : <http://www.더트루엘포항.com>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538-3번지

■ 분양문의 : 1522-2319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